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
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
도로·하천·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
매입 소요경비의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00. ~ 3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5까지 지원 보조율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유지 매입경비 보조율에 관한 적용례)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율에 관한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하는 반환공여 구역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보조금의 보조율) ① (생략) <u>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.</u>	제31조(보조금의 보조율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5까지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525